

#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9. 4) 상정
-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9. 4) 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김 창 열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,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.(안 제1조)  
- 제42조 → 제80조

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특이사항 없음.	○ 특이사항 없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  있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  있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음  있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  있음

##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명 “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”를 “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”를 “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업간”을 “기업 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9인이내의”를 “19명 이내의”로 하고, 제3항 중 “소비자등”을 “소비자 등”으로 하며, “전문가중에서”를 “전문가 중에서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전임자의 잔임기간”을 “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6조제목 (의견청취등)”을 “(의견청취 등)”으로 하고, 본문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라”로 하며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“발생하였을 때”를 “발생하였을 경우”로 하며,

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“어려울 때”를 “어려울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“소멸된 때”를 “소멸된 경우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48호
의결 년월일	2009. 9. 8. (제154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8. 2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# 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,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.(안 제1조)

- 제42조 → 제80조

##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명 “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”를 “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”를 “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업 간”을 “기업 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9인이내의”를 “19명 이내의”로 하고, 제3항 중 “소비자등”을 “소비자 등”으로 하며, “전문가중에서”를 “전문가 중에서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전임자의 잔임기간”을 “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6조제목 (의견청취등)”을 “(의견청취 등)”으로 하고, 본문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라”로 하며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“발생

하였을 때”를 “발생하였을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“어려울 때”를 “어려울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“소멸된 때”를 “소멸된 경우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b>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</b>	<b>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</b>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부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<u>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자문기구인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다음 <u>각호</u>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해외자본의 관내유치 및 <u>기업간</u> 흡수·합병 추진에 관한 자문</p> <p>4.~6. (생략)</p> <p>7. <u>기타</u>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자문</p> <p>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19인이내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「<u>지방자치법시행령</u>」 제80조에 따라 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능) -----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 <u>각 호</u>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<u>기업 간</u>-----</p> <p>4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 <u>19명 이내</u>의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③위원은 기업경영 컨설턴트, 회계사, 변호사, 기업인, <u>소비자등</u> 경제와 관련한 <u>전문가중에서</u> 시장이 위촉한다.</p>	<p>③ ----- -----<u>소비자 등</u> ----- ----- <u>전문가 중에서</u> ----- -----.</p>
<p>④ (생략)</p> <p>제4조(임기)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<u>전임자의 잔임기간</u>으로 한다.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임기) ----- ----- ----- <u>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</u>-----.</p>
<p>제6조(의견청취등)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의견청취 등) ----- 제2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.</p>
<p>1.~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, 참고인, 전문가 등의 의견개진 요청</p>	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<u>각호</u>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<u>발생하였을 때</u>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<u>발생하였을 경우</u>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</p> <p>2. 질병 또는 <u>기타</u>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<u>어려울 때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위촉원인이 <u>소멸된 때</u>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<u>어려울 경우</u>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<u>소멸된 경우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 (간사)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<u>1인</u>을 두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간사) ----- ----- ----- <u>1명</u> ----- -----.</p>
<p>제9조(일비 및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</p>	<p>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제10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0조(시행규칙) -----<u>시행에</u>----- ----- -----.</p>